

부천시도시·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년 11월 23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12월 2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16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(2004년 12월 14일)
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 설명자 :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)

□ 제안이유

-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노후·불량주택들을 체계적,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재건축관련 규정을 통합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(2002. 12. 30 법률 제6852호)되고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이 제정(2003. 6. 30 대통령령 제18044호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도시·주거환경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조성하도록 함.(안 제2조)

- 기금은 법 제82조제2항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세의 15%,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부담금의 시 귀속분의 50%, 정비구역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%, 공유지 매각대금의 30% 및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, 용자금회수 및 이자수입, 수탁사업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함.(안 제3조)
- 기금용도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비 및 정비기반시설 사업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 및 용자, 정비기반시설설치 부담금,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용자 등에 사용토록 함.(안 제4조)
-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되,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도록 함.(안 제5조)
-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건설교통국장으로, 분임기금운용관은 도시개발사업소장, 기금출납원은 주무팀장으로 지정·운영하도록 함.(안 제6조)
- 기금운영계획안, 기금결산보고서안, 보조금 및 용자금 규모의 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정함.(안 제7조 내지 제12조)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| 질 의 | 답 변 |
|---|--|
| ○ 기금조성과 관련한 향후 목표치 ? | ○ 기금 조성의 상한금액은 없음. 년 26억을 예상하고 있으나 기반시설 조성 비용에는 많이 부족함. 성남시는 890억정도 확보하고 있고 매년 200억을 조성하여 1조규모의 기금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. |
| ○ 기금이 확대되면 기금운용관을 공무원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? | ○ 점차 기금이 확대되면 관련 조항을 재검토하겠음. |
| ○ 기금설치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하는지 ? | ○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였음. |

| 질 의 | 답 변 |
|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천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향후 얼마나 예상되는지 ? ○ 기금 26억은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부족한데 확보 계획은 ? ○ 확보율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변경할수 없는 것인지 ? ○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그에따른 개발계획에 의한 지원도 가능한 것인지 ?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정법(약칭)에 의거 개발이 된다면 향후 2010년까지 약 9건으로 예상하고 있음. ○ 2003년도 도시계획세의 15%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기타는 미미한 사항으로써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금조성 확보율을 정해 주었음. ○ 관련법과 도 조례에 근거하나 상향조정이 가능함. 성남시는 30%로 정하고 있음. ○ 성격이 다름.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별도의 자금이 지원될것임. |

4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 : 없 음
- 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- 수정 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-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

부천시도시·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및운용 조례안에대한수정안

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의안 번호 | 관련 제319호 |
| 의결 년월일 | 2004. 12. 23 |

제안년월일 : 2004. 12. 20

제안자 : 건설교통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도시·주거환경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15를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나
- 향후 우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발생율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기금확보율로써 이를 보완하고자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30으로 상향 조정하였음.

2. 주요골자

- 법 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15를 100분의 30으로 상향 조정함.(안 제3조 제1항 제1호)

부천시도시·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부천시도시·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및운용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3조 제1항 제1호중 “도시계획세의 100분의 15”를 “도시계획세의 100분의 30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제 정 안 | 수 정 안 |
|---|--|
| <p>제3조(기금의 조성)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법 제82조제2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<u>도시계획세의 100분의 15</u></p> <p>2호.~8호.(생략)</p> | <p>제3조(기금의 조성) ①----- -----</p> <p>1. ----- <u>도시계획세의 100분의 30</u></p> <p>2호.~8호.(제정안과 같음)</p> |

부천시도시·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 번호 | 제319호 |
| 의결 년월일 | 2004.12.23 (제116회) |

제출년월일 : 2004.11.23
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○ 산업화·도시화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노후·불량주택들을 체계적·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재건축관련 규정을 통합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(2002.12.30, 법률 제6852호)되고, 이에 따른 동법시행령이 제정(2003. 6. 30, 대통령령 제18044호)됨에 따라, 이에 맞추어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도시·주거환경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조성하도록 함.(안 제2조)
- 기금은 법 제82조제2항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세의 15%,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부담금의 시 귀속분의 50%, 정비구역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%, 공유지 매각대금의 30% 및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,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, 수탁사업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함.(안 제3조)

- 기금용도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비 및 정비기반시설 사업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 및 용자, 정비기반시설설치 부담금,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용자 등에 사용토록 함.(안 제4조)
-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되,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도록 함.(안 제5조)
-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건설교통국장으로, 분임기금운용관은 도시개발사업소장, 기금출납원은 주무팀장으로 지정·운영하도록 함.(안 제6조)
- 기금운영계획안, 기금결산보고서안, 보조금 및 용자금 규모의 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정함.(안 제7조 내지 제12조)

[수정안포함]

부천시도시·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,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·주거환경정비사업(이하 “정비사업”이라 한다)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부천시도시·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설치) ①도시·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,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도시·주거환경정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·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.

제3조(기금의 조성)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법 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30
2. 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
3. 법 제82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관리자의 부담금

4. 법 제82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(주택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)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20, 공유지매각대금의 100분의 30

5.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

6. 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용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

7.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

8. 그밖의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부과·징수책임자는 지체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은 납입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.

1. 법 제63조 및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용자

2.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

3.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용자(다만,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)

4. 국고용자금에 대한 상환금

5.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순환주택, 임대주택건설 및 구입비(다만,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)

6.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, 기초조사, 연구, 측량, 감정비용 및 행정관리비

7. 기타 기금의 운용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

제5조(기금의 운용관리) ①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,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의 일부를 시금고와의 협약에 의하여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한다.

제6조(기금관리공무원 지정)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 : 정비사업업무 담당국장
2. 분임기금운용관 : 정비사업업무 담당과장
3. 기금출납원 : 정비사업업무 주무담당

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원회 설치)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도시·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한다.

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정비사업업무담당국장이 된다.

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1. 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
2.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
3.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과장이 된다.

제8조(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9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위원회의 운영)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.

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1조(일비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실비 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안
2. 기금결산보고서안
3. 보조금 및 용자금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기금운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3조(기금운용계획)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2.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3. 정비기금재산에 관한 사항
4. 기타 정비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(기금결산)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1.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

2.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

3.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

4. 기타 기금 결산에 필요한 서류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5조(관련규정의 준용)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세계현금의 수입·지출·출납·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